

# 서울특별시

전화(02)731-6141~4, 6541~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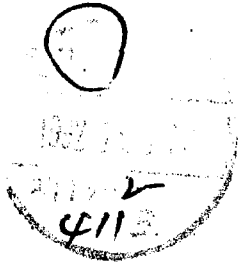
문서번호 : 예산10200-

시행일자 : 1992. 12. 17

(경유) :

수신 : 내부결재

참조 :



|        |          |   |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|       |
|--------|----------|---|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-|-------|
| 취급     |          | 시 장   |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|       |
| 보존     |          |   |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|       |
| 기획관리실장 | 전 결      |   |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|       |
| 예산담당관  |          | 법무담당관   |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|       |
| 예산총괄계장 |          | <table border="1" style="font-size: small;"> <tr> <td>의심자</td> <td>199-1-11</td> <td>제 44호</td> </tr> <tr> <td>담당자</td> <td>법제계장</td> <td>법무담당관</td> </tr> </table> | 의심자 | 199-1-11 | 제 44호 | 담당자 | 법제계장 | 법무담당관 |
| 의심자    | 199-1-11 | 제 44호   |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|       |
| 담당자    | 법제계장     | 법무담당관   |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|       |
| 기안     | 최항도      |   |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|       |

제 목 : 1993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확정

1. 의사 2130 - 400('92.12.15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시의회로부터 1993년도 우리시의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이

다음과 같이 승인 이송 되었기, 지방자치법 제124조 2항 규정에 의하여 별안과 같이

일반 공람 고시코져 합니다.

### 가. 예산규모

(단위:천원)

| 구분   | 요구액           | 승인액           | 증 감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계          | 삭 감         | 증 액        |
| 계    | 7,220,750,000 | 7,217,226,997 | △3,523,003 | △48,368,743 | 44,845,740 |
| 일반회계 | 3,202,500,000 | 3,202,500,000 | -          | △21,954,025 | 21,954,025 |
| 특별회계 | 4,018,250,000 | 4,014,726,997 | △3,523,003 | △26,414,718 | 22,891,715 |

나. 승인내용 : 따로붙임

(재2안)

수 신 : 공보관

발 신 : 예산담당관

제 목 : 1993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예산 확정고시의뢰

1. 1993년도 우리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이 1992.12.14

서울특별시의회 의결로 최종 확정되었기 때로붙임과 같이 시보에 고시의뢰하오니 조치

바랍니다.

따로붙임 : 1993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예산고시(안)

원본  
조필  
12/12

서 울 특 별 시 장

## 1993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예산고시

서울특별시 의회에서 의결된 1993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1992. 12. 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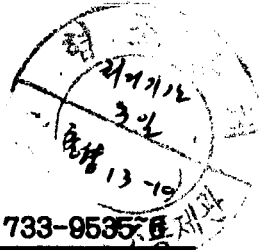
### 서 울 특 별 시 장

| 연번 | 회 계 별           | 예 산 액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1  | ○ 일 반 회 계       | 3,202,500,000,000원 |
| 2  | ○ 특 별 회 계       | 4,014,726,997,000" |
|    | - 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   | 1,564,200,000,000" |
|    | -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   | 890,700,000,000"   |
|    | - 수도사업특별회계      | 632,500,000,000"   |
|    | - 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 | 249,414,693,000"   |
|    | - 하수처리장비특별회계    | 194,851,000,000"   |
|    | - 교통사업특별회계      | 124,875,304,000"   |
|    | - 국민주택비특별회계     | 89,366,000,000"    |
|    | - 주택재개발비특별회계    | 84,277,000,000"    |
|    | - 주거환경개선사업비특별회계 | 53,967,000,000"    |
|    | -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| 56,625,000,000"    |
|    | -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   | 42,450,000,000"    |
|    | - 유료도로비특별회계     | 16,705,000,000"    |
|    | - 교통방송사업비특별회계   | 7,700,000,000"     |
|    | - 병원사업특별회계      | 7,096,000,000"     |

원본대조필  
1993.12.16

# 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 731-6849 / 전송 733-9535

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|
| 문서번호 | 도시30310-11/1992-4/2 | 취급     | 시      | 장          |
| 시행일자 | 1992. 12.           | 보존     |        |            |
| (경유) | 제 1 안               | 부시장    |        |            |
| 수신   | 내부결재                | 도시계획국장 |        | 법무담당관(의사)의 |
| 참조   |                     | 도시계획과장 |        | 협조통제관      |
| 제목   |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     | 기안     | 지역계획계장 | 1992.12.17 |

1. 우리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 하고 이를 고시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.

2. 본건 '92년도 제9차('92. 12. 10)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심의 가결된 사항입니다.

가.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 조서

| 구 분  | 시 설 명 | 위 치              | 면 적 (㎡)  |          |          | 비 고  |
|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|
|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| 기 정      | 변 경      | 변 경 후    |      |
| 변경결정 | 공 원   | 동작구 상도동 산58의 3필지 | 371, 186 | 증11, 301 | 382, 487 | 추가지정 |

나. 도시계획시설 (녹지) 결정조서

| 구 분 | 시 설 명 | 위 치            | 면 적 (㎡) | 비 고  |
|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|
| 신 설 | 녹 지   | 구로구 시흥동 230-41 | 126     | 신규지정 |

첨 부 : 위치도면 각 1부. 끝.

## 서울특별시 장

# 고 시 안

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

##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 및 변경결정 하였기 같은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동작구청, 구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1992. 12

# 서울특별시 장



### 가.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 조서

| 구 분  | 시 설 명 | 위 치              | 면 적 (㎡) |         |          | 비 고  |
|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|
|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| 기 정     | 변 경     | 증.감      |      |
| 변경결정 | 공 원   | 동작구 상도동 산58외 3필지 | 371,186 | 382,487 | 증 11,301 | 추가지정 |

### 나. 도시계획시설(녹지) 결정조서

| 구 분 | 시 설 명 | 위 치            | 면 적 (㎡) | 비 고  |
|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|
| 신 설 | 녹 지   | 구로구 시흥동 230-41 | 126     | 신규지정 |

다. 관계도서 :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동작구청, 구로구청 도시정비과 비치도면과 같음. 끝

도시 30310-

제 3 안

수 신 건설부장관

제 목 같은건

1. 우리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 
규정에 따라 별첨 고시문 사본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 하였기 보고합니다.

- 첨 부 1. 고시문 사본 각 2부.  
2. 관계도서 각 2부. 끝.

## 서울특별시

제 4 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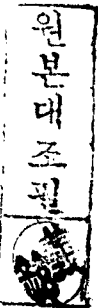
수 신 총무처장관

제 목 관보 게재의뢰

1. 다음과 같이 관보 게재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가. 게재구분 : 고시  
나. 게재건명 :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  
다. 근거법규 :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

첨 부 고시문 사본 각 2부 . 끝.

## 서울특별시



도 시 30310-

제 5 안

수 신 공보1담당관

제 목 시보 게재의뢰

1. 다음과 같이 시보게재 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게재구분 : 고시

나. 게재건명 :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

다. 근거법규 :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

첨 부 고시문 사본 1부 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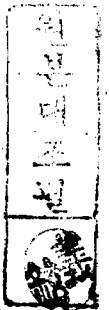
## 도 시 계 획 과 장

제 6 안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 도시정비과장

제 목 같은건



1. 우리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 하였기 홍보  
하니 일반인에게 열람, 도면정리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제반 도시계획 업무에 만전을  
기하기 바라며,

2. 도시계획법 제13조에 의한 지적고시를 조속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 
바람.

첨 부 고시문 사본 및 관계도서 각 1부. 끝.

## 서 울 특 별 시 장

수신처 : 동작구청장, 구로구청장

도 시 30310

제 7 안

수 신 수신처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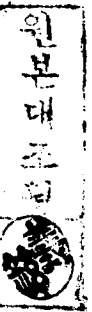
제 목 같은건

1. 우리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별첨 고시문 사본 및 도면과 같이 결정 및  
변경결정 하였고 등보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첨 부 1. 고시문 사본 및 관계도면 각 1부. 끝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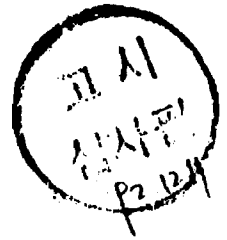
도 시 계 획 과 장



수신처 : 공원과장, 녹지과장



# 고 시 안



1992-  
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 
412

##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 및 변경결정 하였기 같은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동작구, 구로구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1992. 12

# 서울특별시

원본대조필

### 가.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 조서

| 구 분  | 시 설 명 | 위 치              | 면 적 (㎡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 고  |
|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| 기 정     | 변 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변경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변경결정 | 공 원   | 동작구 상도동 산58의 3필지 | 371,186 | <del>총11,901</del><br>382,487 | <del>382,487</del><br>총 11,301 | 추가지정 |

### 나. 도시계획시설(녹지) 결정조서

| 구 분 | 시 설 명 | 위 치            | 면 적 (㎡) | 비 고  |
|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|
| 신 설 | 녹 지   | 구로구 시흥동 230-41 | 126     | 신규지정 |

다. 관계도서 :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동작구, 구로구 도시정비과 비치도면과 같음. 끝



승실대학교

공원빈경절정 (일부추가)  
371, 186 → 382, 487m  
(증 11, 301m)

상도근린공원

제

5